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문공보담당자 인권보호관 정지영 전화 061 - 729 - 4379	보 도 자 료 2023. 4. 17.(월)

제 목	‘사기 연루 연쇄 사망’ 언론보도된 사기 사건 관련 조직적인 범죄수익은닉 행위 규명하여 일당 5명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**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**(부장검사 최선경)는, ’22. 6.경 순천 지역 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업 투자 및 원금 보장을 미끼로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이 자살하여 ‘사기 연루 연쇄 사망 의혹’ 제기되어 지역내 민심이 흉흉해졌던 사건과 관련하여,

- ’23. 3. 2. **주범 A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**함과 동시에, **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인지**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야 하는 **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**하였음

● 수사 결과, **A가 공범 사망 직후부터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**하여 조직적으로 **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은닉**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마치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한 사실 및 **A의 범죄수익은닉 범행에 지인 B, C 및 가족 D, E도 적극 가담한 사실을 규명**함

● 아울러, **A의 은닉재산을 찾아 추징보전 청구**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**환수 조치**하였음

1 피고인

분류	순번	인적사항	관계
사기 본범	①	A(여, 53세, 무직)	1심 재판 중
조력자	②	B(남, 61세, 무직)	A의 지인
	③	C(남, 62세,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)	A의 지인
가족	④	D(여, 30세, 아르바이트생)	A의 장녀
	⑤	E(여, 26세, 회사원)	A의 차녀

2 공소사실 요지

- (A, B, C, E) A는 친구 H와 공모하여 '16. 8.~'20. 6. 총 9명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억여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'22. 6.경 H가 사망(자살 추정)하자, 그 직후 가족 및 주변인들과 범죄수익등인 자금을 은닉하기로 모의하고,

  - ① '22. 6. 보험해약, 주식매도 등으로 자산 현금화 후 E 계좌로 1억여 원 이체 후, E 계좌에서 B 계좌로 자금이체한 다음, B 계좌에서 도피처로 마련한 아파트, 상가 임차보증금 2,800여만 원 지급

  - ② '22. 6. 위 E 계좌내 보관된 자금을 다시 전액 A 계좌로 이체 후 여수 시내 여러 곳 은행에서 합계 8,000만 원 현금 인출

  - ③ '22. 6.~'23. 2. 위 현금 인출한 8,000만 원 중 7,000만 원을 C가 보관하면서 C 계좌로 상가 공사비용 등 지급 **【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】**

- (A, C) '22. 9.경 및 '22. 12.경 A의 범죄수익을 은닉, 가장할 목적으로 도피처로 마련한 상가를 C 명의로 운영하고자 C 명의 2개 계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 **【전자금융거래법위반】**

- (B) '22. 6. 22.경 A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A에게 도피처로 제공 **【범인은닉】**

- (D) ’22. 6. 및 ’22. 10. A로부터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 9,200여만 원 수수 **【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】**
- (E) ’22. 6.~7. A로부터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 1,000여만 원 수수 **【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】**

3 주요 진행 경과

- ’23. 2. 10. 순천경찰서, A 구속(35억 원 사기 및 유사수신혐의)
- ’23. 2. 14. 당청 송치
- ’23. 3. 2. 당청, A 구속 기소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지
- ’23. 3. 2.~4. 10. 계좌추적, 휴대폰 등 증거분석 및 관련자 조사
- ’23. 4. 11. A, B, C, D, E 각 불구속 기소

4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당청이 ‘23. 3. 2. 구속 기소했던 A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사건은 ‘22. 6.경 공범 사망 후 대규모 사기 피해로 자살자가 속출한다는 소문이 돌아 언론보도되는 등 순천 지역 민심이 흉흉해졌던 사건임
- 본 건 사안의 중대성 및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당청은 A 구속영장 청구시부터 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, ’Two-track’ 수사(범죄수익은닉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)를 진행하여, A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범죄수익을 은닉·가장한 범행 전모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어 동결 조치하였음
-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 회복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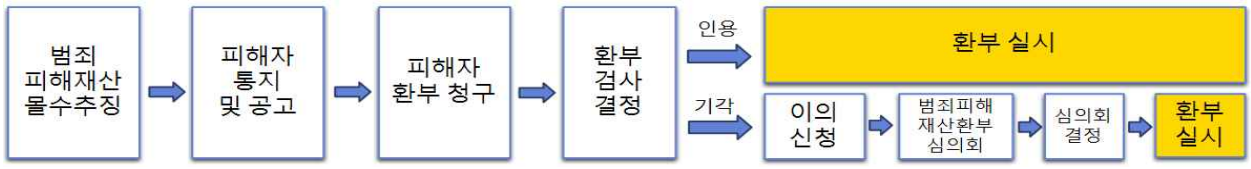
≪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 ≫